

제3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6. 7. 8.(수)



달 성 군 의 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36호
- 제 출 일: 2026년 7월 7일
- 제 출 자: 김은영 의원 등 4인

2. 제안사유

-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회의장 의석배정 기준 정비(안 제8조제1항)
- 위원회 명칭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기본조례의 의사운영과 관련하여 타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표현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8조의제1항 경우 종전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을 배정’하던 방식에서 상임위원회 운영제도를 재검토 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원 구성 초기 절차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아울러 안 제10조의제1항에서는 청가와 결석 신고 대상 중 기존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열거되어 있던 문구를 '위원회'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의회 조직 체계 변화에 맞추어 자치법규 간의 유기적인 문언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제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자구 정비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원 구성 초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법규 간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37호
- 제 출 일: 2026년 7월 7일
- 제 출 자: 김은영 의원 등 4인

2. 제안사유

- 달성군의 개발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하여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제14조)
- 특별위원장의 사임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달성군의회에서 운영 중인 소관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복지·경제건설위원회) 체제를 폐지하고, 의원 전원이 안건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제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던 소관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분장 사무 규정을 전면 삭제(제3장)하고, 의회 내 안건 심사 구조를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체제로 일원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 농·산업, 복지 등이 유기적으로 복합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별로 사안을 구별하기 어렵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인 '분야별 심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의원 간 사전 의견 조율 절차가 세심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38호
- 제 출 일: 2026년 7월 7일
- 제 출 자: 김은영 의원 등 4인

2. 제안사유

- 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에 따라 의안 회부, 주민조례 청구,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절차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사일정 작성 및 의안 제출 관련 사항 정비(안 제9조, 제12조)
- 의안 회부 및 안건심의 절차 정비(안 제13조, 제17조)
- 표결방법에 전자투표 방식 추가(안 제40조)
-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사 절차 정비(안 제66조, 제70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폐지 및 운영 체계 개편에 맞추어, 의회 내 안전 발의 및 회부, 심사 등 일련의 회의 운영 절차를 정비하여 절차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규칙상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전을 회부한다’고 되어 있던 조항들을 본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회부 체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임위 폐지라는 의회 조직 개편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연계 정비로서, 의사 진행의 혼선을 막고 회의의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본회의의 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전원 참여형 구조하에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적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종합적인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자치입법권의 주체인 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한 개정이며, 관련 조례인 위원회 조례 개정안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